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4. 7. 16.(화) 14:00~17:50

2. 장 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등록번호	2996
등록일자	24.08.14.
처리과	기획운영담당관실

위 원 장



간 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2024. 7. 16.

사법정책자문위원회

I. 개요

- 일시: 2024. 7. 16.(화) 14:00~17:5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권오곤(위원장)
 - 김영화, 김영훈, 이경춘, 전원열, 조현욱, 차병직(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윤성식(간사), 이문렬(서기)
- 배석자
 - 이창경, 이지영, 장정환(이상 주무위원)
 - 황인성(실무지원단장), 고병석, 이재혁, 이승일, 김재남, 고원혁(이상 실무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위원장 인사말씀

-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오늘은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첫 회의가 되겠음.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사법부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사법부가 발전하는 데 초석을 놓을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림

2. 제1차 회의 회의록 확정

-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을 확정하였음



3.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웹 공간 및 게시판 신설 보고

- 실무지원단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웹 공간 및 게시판 신설 경과를 보고함

4.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가. 기초발제

- 이창경 주무위원, 법조일원화제도 도입과 법관임용자격, 최소 법조경력요건 완화의 필요성, 성공적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전문위원 제1연구반 논의경과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전원열 위원, 위원장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이창경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전원열 위원

- 프랑스 사법관의 선발방식 중 국립사법관학교를 통한 선발이 대부분인지? 아니면 사법관 직접 편입 방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 이창경 주무위원

- 국립사법관학교를 통한 선발이 주된 방식으로 보이나, 정확한 비율을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위원장

- 미국의 경우 5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 요건일 뿐이므로, 실제로 5년 경력자가 가장 많이 임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맞는지?

- 이창경 주무위원

- 그렇게 알고 있음

- 위원장

- 10년 이상 장기법관의 임용절차를 달리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시각과 관련해서, 전담법관 임용에도 동일한 논의가 있는지? 전담법관의 경우 어떻게 선발하며, 일반 법관 임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이창경 주무위원

- 전담법관은 판사로 근무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부장판사가 되는 일반적인 법관과는 인사체계가 다름. 임용 분야를 정해서 임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분야와 근무 법원이 변경되지 않음. 주로 민사소액으로 많이 배정되며, 선발 인원도 많지 않아 일반 법관 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다음과 같은 김영훈 위원, 조현욱 위원, 차병직 위원, 이경춘 위원, 김영화 위원, 전원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김영훈 위원

- 법조일원화를 위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나, 7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대형로펌은 물론 법원에서도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법률 개정 시도가 좌절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논거를 찾아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음. 다만,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들을 예상하여 개정하려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조현욱 위원

-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요건은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10년 경력을 가지고 합의부 배석판사로 들어오게 되면 재판부 구성상의 문제도 발생 할 수 있고, 5년을 넘어 10년의 사회경험을 있다고 해서 법관의 자질을 더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 차병직 위원

- 이 주제는 현실적으로 법관의 수급과도 관련이 있고, 장차 법관을 희망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일종의 대기기간을 발생시켜서 진로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우선 현실적으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 필요성의 근거로 내세운 논거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보임



○ 이경춘 위원

- 장기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향보다는 5년 정도의 경력만으로도 훌륭한 자질을 갖춘 법관을 충원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더 많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김영화 위원

-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법원에서 제기하는 경력요건 완화 요구는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다만, 2011년 법조일원화가 시작되고 13년 정도가 흐른 상황에서 달라진 사법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령 제도 도입 당시에는 사법부의 관료적 통제가 주요 이슈였지만, 현재 사법정책의 우선 가치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
-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는 점에 대하여 부담을 가질 수 있으나, 국민에게 필요한 사법제도를 위하여 새로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만으로 타당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제1연구반 논의경과 중 ‘3년의 군법무관 복무와 2년의 재판연구원 임기를 마치면 법관으로 임용이 가능하게 되는바, 이는 기존 모델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전원열 위원

- 대륙법계 국가에서 현행 법률 규정과 같이 10년 장기의 법조경력 요건을 두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영미법계 법원제도와 대륙법계 법원제도의 핵심적인 차이는 인사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관 제도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사 대상이 아닌 법관 제도를 유지하는지에 있음. 영미에서 법관은 절차 진행자의 성격이 강하고, 한국에서 법관은 관료적 성격을 가진 업무처리자의 성격이 강함
-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서 법조 경력 ‘10년’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영미 법계와 대륙법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함. 지나치게



어린 판사가 임관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경력 요건을 두는 것은 좋지만, 그 경력 기간은 5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위원장, 김영훈 위원, 차병직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위원장

- 처음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 장기적 방향으로 1심 단독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조일원화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논지 구성은 국회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법조일원화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법관의 수급 문제 등을 타개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합의부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진정한 의미의 대등재판부 합의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대등재판부 합의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까지도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김영훈 위원

- 로펌 입장에서도 5년, 10년이 아니라 7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인재 유출 우려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음. 또한 10년의 법조경력 요구 시 시험을 통해 법관을 임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있음. 가령 10년의 법조 경력자에게는 그 동안 활동했던 기록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평가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함
- 국회를 설득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법조경력을 쌓은 후 임용된 법관들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5년의 법조경력으로도 충분하다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장

- 시험을 통한 임용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5년 경력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신지?

○ 김영훈 위원

- 5년 경력자 정도면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7년이나 10년



이 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임

- 다음과 같은 이경춘 위원, 위원장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이창경 주무위원의 답변, 전원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경춘 위원

- 지원하는 해에 최소 법조경력 5년을 넘어 7년~10년 사이의 법조경력을 보유한 지원자에 대한 평가 내용이나, 채용 후 사법재판 역량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이창경 주무위원

- 현재 5년에서 7년 사이 법조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나, 법관 임용 절차에서 경력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음. 또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법관 임용 후 실제 재판업무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음. 다만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경향성에 근거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임

- 이경춘 위원

- 법관 임용 경력을 완화하였을 경우에 대등재판부를 확충해가는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 이창경 주무위원

- 합의부 구성에 관하여 통일적인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사무분담을 정할 때 일부를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방법원 1심 합의부를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식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현재는 항소부를 중심으로 대등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음
 - 합의부 구성을 위해서 법조경력 5년 정도의 짧은 법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합의부 구성 논의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이경춘 위원

- 회의자료 17면에 경력 15년 이상 부장판사와 10년 이하 배석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대략 350개 정도라고 되어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 이창경 주무위원

- 그렇게 볼 수 있음

○ 위원장

- 법조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1심 단독화를 상정하였는지 궁금함. 현실 여건상 합의부의 필요성 때문에 1심 단독화는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1심 단독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여건상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 이창경 주무위원

- 법조일원화제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제조건 중 하나로 1심 단독화, 판결문 간소화, 항소심 사후심화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음에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음
- 법원 입장에서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더라도 현실적으로 합의부에 의한 재판, 즉 신중하고 충실향한 재판을 바라는 입장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1심 단독의 관할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합의부를 줄여나가는 정도가 한계였을 것으로 생각함

○ 전원열 위원

- 이 논의의 전제는 단순히 법조경력 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구성 전체하고 맞물려있음
- 1심 단독화를 위하여 주무위원께서 판결문 간소화를 언급하셨는데, 판결문 간소화 정도로는 1심 단독화를 달성하기가 어려움. 미국의 경우 판결문 작성 시 결론만 쓰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판결 이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1심 판사들에게 로클럭이 모두 배정되어 있음. 우리나라로 로클럭이 모두 배정되어야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1심을 단독화하고 2심을 대등재판부 합의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영미법 계와 마찬가지로 2심은 법률심이 될 필요가 있음. 법률 문제는 합의부 구성원 상호간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하지만 사실인정 문제는 설득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합의부는 법률심 단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조현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조일원화 및 법관 임용 시 일정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에는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사람이 중요한 재판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함. 과거 사법시험 제도와 다르게 현재 시스템 자체가 대학 졸업 후 로스쿨을 거치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는 법관이 임용된다는 사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은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법관이 적어도 10년 정도의 법조경력을 갖추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과 별개로, 재판장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알릴 필요가 있음
 - 5년 법조경력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사법 업무 수행을 통해 충실히 경험을 쌓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단독재판장의 경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위원장, 차별적 위원, 전원열 위원의 의견 및 김영화 위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이창경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법조일원화를 향한 목표는 유지하되,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훌륭한 법관의 임용, 판결문 간소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차별적 위원
 -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요소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함. 따라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언급된 논거 외에도 새로운 논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연령대가 낮은 배석판사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대등재판부 확대 등의 관계에서도 일관성 있는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음
 - 기존 경력법관제의 장점으로 언급된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한 법관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부분은 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전원열 위원



- ‘사회 경험이 풍부하면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명제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처음부터 법관으로 임용되더라도 훌륭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뿐더러, 이는 다분히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명제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외부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함

○ 김영화 위원

- 법조일원화를 향한 목표는 변함없다는 법원의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그러한 기저에서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회의자료 75면에 ‘3년의 군법무관 복무와 2년의 재판연구원 임기를 마쳐 법관 임용이 가능하게 되면 법조일원화 이전 경력법관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어떠한지 궁금함

○ 이창경 주무위원

- 회의자료 47~48면에서 설명하였듯이 법무관 복무 후 재판연구원을 거쳐서 법관으로 임용되는 인원은 매우 소수인데, 이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재학생 중 군 미필자가 계속 감소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됨
- 법무관 경력도 동일하게 법조경력으로 인정되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기 군 법무관 사례와 장기 군법무관으로 5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음

■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임용절차와 관련해서 5년 이상의 그룹과 10년 이상의 그룹에 대하여 절차를 차별화하여 임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조현욱 위원, 위원장, 이경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조현욱 위원

- 경력에 따라서 시험 유무를 달리하는 것은 불공정 소지가 있고, 시험 없이 임용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보임. 또한 장기법조경력자에 대하여 시험을 면제할 경우, 10년의 기간 변호사 활동으로 경제력을 쌓은 후 명예를 위하여 법관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원장



- 전담법관이 시험 없이 선발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조현욱 위원

- 전담법관은 임용 경로, 담당하는 업무 등이 다르므로 별개라고 생각함. 또한 법관 경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나이도 높은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할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경춘 위원

- 이 주제는 향후에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함. 법원 내에서도 사무분담을 하거나 호봉을 산정할 때 법조경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력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임

○ 조현욱 위원

- 건의문 내용과 같이 법관임용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취지는 아님

■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아이디어 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법조경력을 5년으로 완화할 경우 이와 함께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길 제안 드립니다. 외부 경력 기간을 상대적으로 늘릴 수 있고, 재판연구원도 현재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 할 수 있어 로스쿨 입장에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함

다. 건의문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① 지향점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법관의 근무여건과 법조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적인 한계와 지방법원 합의부를 통한 충실한 재판, 사건처리의 효율성 향상 등 법원에 대한 국민의 요청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재판제도와 법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 법조일원화의 토대와 여건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② 개선방안

- 신속하고 공정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과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법관의 업무부담, 법관 처우와 근무여건, 법조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실현한다는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훌륭한 장기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활성화를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5:55경 정회

※ 16:10경 속회

5. 감정제도 개선

가. 기초발제

- 이지영 주무위원, 감정절차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 방향, 감정 관련 기구 설치, 의료감정 제도 개선, 감정인 평정 활성화 방안, 전문위원 제2연구반 논의경과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이경춘 위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이경춘 위원
 - 감정료를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회



생법원의 관리위원회나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한 것 같은데, 법원에서 의료인을 감정절차 관리 담당자로 채용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전문위원 연구반 내부에서도 논의 사안으로 적절한지 의견을 나눈 바 있음. 과거부터 감정지연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료 현실화, 감정인 평정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감정료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감정 회신을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면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되는 한편, 당사자의 소송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감정의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개선하는 데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여러 의료인들과 대화해본 결과, 위촉직인 전문심리위원 정도의 급여라면 충분히 유능한 의료인 채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더 나아가 전문심리위원 본래의 임무와 감정 관리의 임무를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하되 간호사 등 보조 인력을 두는 방식으로 하면 실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음

■ 다음과 같은 전원열 위원, 이경춘 위원, 위원장의 질의와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전원열 위원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 이지영 주무위원

- 의료감정원은 2019년부터 운영된 기관이며, 감정 업무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임. 학회에 연결을 주선하고 학회에서 감정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수행함. 의료감정을 전격적으로 수행하면서 감정료를 통합관리하고, 법원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 전원열 위원

- 이용률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 이지영 주무위원

-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전원열 위원

- 모든 재판부에서 다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법원에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의사 선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있는데, 의료감정원에서는 감정의를 익명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법원 의료감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실무적으로 감정 절차가 잘 운영되고, 감정내용이 좋기 때문에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경춘 위원

- 경험상 종전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1차 감정결과가 오면 그 결과의 의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하는 형태로 진행한 것으로 기억함. 현재에도 그렇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1차 감정부터 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함

○ 이지영 주무위원

-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과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감정조정중재원에서 환자에 우호적인 감정을 많이 진행하였음. 이에 대응하여 의사협회에서도 '의료감정원'이라고 명명하여 본격적으로 의료감정을 수탁 받겠다고 하여 지금의 의료감정원이 운영되게 되었음
- 기존에는 사실조회 결과를 감정결과로 원용하는 것을 재판부에서도 꺼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하되 일반적인 의료지식을 묻는 사실조회만 의료감정원에 보냈지만, 현재는 조정중재원이나 의료감정원 모두 1차적인 감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장

- 영미계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직접 감정결과를 가져와서 빤대신문을 진행하는 형식으로는 안 되는 것인지?

○ 이지영 주무위원

- 쌍방 당사자 측에서 당사자가 각각 자신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대동하여 논쟁을 하는 방식을 원하고, 재판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방식의 진행



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이나,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소송절차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당사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텐데, 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정서와 상충되는 면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질의와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고급 의료인을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영상재판도 가능한 상황이므로 전국 단위로 감정관리기구를 두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 고등법원 권역별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 이지영 주무위원

- 각 지역에 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접근성이 좋고, 재판부와의 정서적 거리감 측면에서도 낫다고 판단함. 지방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지역마다 균등하게 감정관리기구가 있을 필요는 있는데, 지방법원 단위로 둘 경우 분야가 다양한 의료인들이 노하우를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임전문심리 위원과 마찬가지로 고등권역별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위원장

- 감정센터를 만들 경우 의사협회나 의료감정원에서 반발은 없을지?

○ 이지영 주무위원

- 의료감정원에 직접 소속된 의료인 및 직원들과 간담회 때 확인은 하겠으나, 감정이 주된 업무가 아닐뿐더러, 영리적으로도 크게 유인이 없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법원에서의 감정은 기존에도 해왔던 것이며, 다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발의 명분도 약할 것으로 봄

○ 위원장

- 재판부와 전문관리위원 간 소통 내용은 당사자에게 공개가 되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서 전문심리위원은 의견을 서면 또는 구술로 재판부에 진술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고 재판부에 대해 의



견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임

- 다만, 기본적인 의료지식이라든지 실체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 간 전화 등을 통하여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일부 비판 의견이 제시된 사례가 있었음. 이를 방지하고자 절차적인 관리를 주로 하는 별도의 감정관리위원회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며, 규칙에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 다음과 같은 전원열 위원, 김영화 위원, 이경춘 위원, 차병직 위원, 조현욱 위원, 김영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원열 위원

- 우리나라의 의료인이나 소송당사자, 법관들이 재판을 ‘준행정적인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영미계에는 신체감정을 제외한 일체의 감정제도가 없으며, 원·피고가 각자 전문가를 대동하여 당사자 간 충분한 반대신문을 거친 후 배심원 혹은 법관이 결정을 내리는 구조임
- 반면, 대륙법계는 중인, 서증, 감정, 검증, 당사자 신문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법관이 결정을 내리는 구조임. 우리가 알고 있는 반대신문권 보장은 2차 대전 후 미국의 제도를 일본이 수입하고 이를 다시 우리가 수입한 제도에 불과하며, 대륙법계는 본래 직권주의적 요소가 강한 것이 특징임
-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센터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감정센터를 도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서 논의한 인사제도에서의 법조일원화, 1심 단독심화 등의 영미법적 대립당사자주의와 상반된 방향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거시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기도 함
- 감정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회의자료 72면과 같이 감정의의 명의를 알리는 것이 타당해 보임. 감정료를 증액하면 어느 정도 개선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김영화 위원

- 감정촉탁서가 17번이나 반송되는 사례를 보면 감정절차 지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다만,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근본적으로 우리 소송구조에서 감정절차의 수요 자



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음

○ 이경춘 위원

- 우리나라 재판이 감정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비판을 받은 지 꽤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법관이 전문 분야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 의견 없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감정인이 중립적이고 정의로운 관점에서 감정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선책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음

○ 차병직 위원

- 실무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함. 비용 문제, 당사자의 신뢰 문제 등 고려할 요소가 많은 주제이므로, 지금 정리된 의견대로 추진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함

○ 조현욱 위원

- 감정관리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함. 의료 비전문가인 법률가가 기재한 감정사항 등을 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자문한다면 절차 진행이 매끄러워질 수 있음
- 특히 대학병원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 중 개업하지 않은 의료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 드림. 이는 법원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보아 전문 경험을 갖춘 시니어 그룹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 김영훈 위원

- 당사자주의가 충실히 구현되어 입증책임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중립적이고 충실한 감정을 하도록 관리하고, 평정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동의는 입장임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의견, 전원열 위원, 이경춘 위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장기적으로는 당사자가 감정 결과를 직접 가져와서 반대신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감정관리위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감정관리위원이 절차적인 면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전원열 위원
- 독일이나 프랑스에서의 감정 지연 문제에 대한 자료는 조사하지 않았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감정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특임법관제도와 의사관계소송 위원회 등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산부인과협회 등의 직능단체에서 감정인을 공인하고 자격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전원열 위원
- 독일의 경우 감정인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감정 회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 이지영 주무위원
- 직능단체에서 관리를 하므로 법원에서 하는 것보다 세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감정료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서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함
- 전원열 위원
- 감정회신 지연으로 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이 소비되고 당사자들도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감정료를 증액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함. 외국 사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감정료 증액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지영 주무위원
- 외국의 감정료에 대해서는 회의자료 46면에 설명되어 있음.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정료 증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서 연구반에서도 100% 증액이라는 획기적인 안을 도출하였음. 다만,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 감정료 증액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임
 - 외국 사례와의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것은 법원의 환경이 매우 다른 것이 주요 원인임.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전문법관의 경우 절차관리에 어려움이 적으나 1~2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는 경우, 특히 절차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여관, 실무관의 경우에는 감정 절차 관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반면 외국의 법관이나 직원은 장기간 한 법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외는 사정이 다른 측면이 있음

○ 이경춘 위원

- 감정료 증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료소송이나 건설소송에서 의사나 시공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승소가액에 비례해서 평면적으로 감정비용을 분담시키는 것보다 감정의 원인을 제공한 의사 또는 시공사에게 감정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이지영 주무위원

- 타당한 말씀임. 실무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감정비용을 따로 하는 재판 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재판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에서 권고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의료연수나 건설재판 실무연수에서 종종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 건의문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① 지향점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감정절차가 자연되고 감정내용이 충실히 않다는 우려가 많으므로, 감정절차의 자체로 인한 재판절차 자연의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개선방안

-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감정결과가 적시에 확신되도록 감정인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여 신속하면서 충실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함
- 의료감정에서 ① 기본감정료를 인상하고 일정 문항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감정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감정료를 적정화하고, ② 진료기록감정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범위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며, ③ 감정인으



로 하여금 감정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비경제적 유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의료감정이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감정인에 대한 평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우수한 감정인을 확보하고 부적격 감정인을 배제하여 충실하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6. 제3차 회의 안건 설명

가.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 이창경 주무위원, 논의의 필요성, 주요 쟁점,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등을 보고함

나.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

- 장정환 주무위원, 논의의 필요성, 현재 사법부 현황, 주요 쟁점 등을 보고함

- 다음과 같은 전원별 위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장정환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전원별 위원

- 요즘 주로 AI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의미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문제가 있음

- 법원 업무 특성상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직접 검토를 해야 할 텐데, AI의 활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클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또한, 소형언어모델(sLLM)을 활용한 인공지능모델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sLLM은 특정 분야에서는 작동하기 쉽지만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는 법률 분야에서 sLLM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AI 활용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법원 업무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정환 주무위원

-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잘 새겨들도록 하겠음.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모델 ISP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 사법부에 어떤 모델이 적합할지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 10여 명이



상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음

7. 제4차 회의 안건 선정

- 위원장, 제4차 회의(9월 예정) 안건으로 ‘법관인사위원회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 판사 제도 개선방안’을 선정함

8.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일정 논의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3차 회의는 8월 14일(수), 제4차 회의는 9월 25일(수), 제5 차 회의는 10월 17일(목), 제8차 회의는 1월 22일(수)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함

9.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2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에 관한 일부 발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의결함

10.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료 외부 공개 여부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2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에 관한 자료는 회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본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1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공개
2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웹 공간 및 게시판 신설 보고	공개
3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공개(일부 수정)
4	감정제도 개선	공개
5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공개
6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	공개



11. 위원장 마무리 말씀

-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마무리 발언을 하였음
 - 논의 사항이 많았음에도 제2차 회의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 많은 고민을 하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림

III. 다음 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 일시: 2024. 8. 14.(수) 09:0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끝).